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49
----------	-----

2022. 2. 10.  
복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 28. 이재민 의원 대표발의(7명 발의)

나. 상정의결

- 제30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2. 2. 10.)

“ 원안가결 ”

## 2. 제안이유( 제안설명 : 대표발의자 이재민 의원 )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함.(안 제3조제5호 신설)

####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5. 검토의견( 전문위원 : 이문성 )

##### 1 조례안의 취지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빈곤예방법’)에 따라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지역아동빈곤위’)를 설치할 수 있으나, 다만 기존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를 통해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위 사항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아동복지심의위’)에게 지역아동빈곤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임.

##### 2 주요사항 검토

#### 가. 빈곤아동 현황

##### 1) 빈곤아동 정의 및 아동빈곤율

- 빈곤아동이란 「아동빈곤예방법」에서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교육·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빈곤아동의 범주를 정하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통계청은 통상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에 속한 아동을 빈곤아동으로 간주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sup>1)</sup>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가처분소득 기준 아동빈곤율은 10.6%이며, 전체 빈곤율 16.3%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라고 하겠음.
- 반면에 2019년 기준 OECD 아동빈곤율은 11.1%인 반면에, 전체 OECD 빈곤율은 11.5%인 바, 한국과 비교할 때 그 간격이 그다지 크지 않음.<sup>2)</sup>
- 한국의 경우 전체 빈곤율(16.3%) 대비 아동빈곤율(10.6%)이 낮은 이유는 저소득층이 출산할 경우 부담해야 할 주거비·교육비를 비롯하여 앞으로 자녀가 겪을 수 있는 빈곤에 처할 위험성 등을 고려한 저출산 현상에 기인한다고 사료됨.
- 출산율 제고는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의 성패를 좌우할 현안이라고 할 것인 바, 저소득층이 출산·양육으로 인한 각종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음.

## 2) 빈곤아동 실태

- 빈곤아동은 돌봄과 학습지원 결여 등에 따라 정서발달 장애 및 학습 부진, 비행, 범죄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sup>3)</sup>
- 빈곤아동은 비빈곤아동에 비해 건강과 영양상태가 뒤떨어지며, 술·담배 등 유해물질에 대한 탐닉률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고 함.

1) 아동빈곤율: 17세 미만의 아동 중 중위소득의 50% 가정 아동의 비율

2) 강남구 전체 가구수는 206,323가구로 추정되며 빈곤가구는 11,533가구인바, 가구기준 빈곤율은 약 5%로 추산됨. 강남구 전체 아동수는 2021년 1월 기준 82,0667명이고 빈곤아동은 812명으로 추산됨.(첨부자료 -4, 5 참조)

3) 김대현, 국회 아동빈곤법안 검토보고, 보건복지위원회, 2010.12, 5쪽

- 빈곤, 이혼, 가출, 질병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의 가속화 등으로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고 이러한 가족기능의 와해가 빈곤가정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빈곤가정의 아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빈곤아동 지원사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별 행정체계가 상이하고 정책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sup>4)</sup>

### 3) 아동 빈곤 예방 등을 위한 아동복지심의위 추가 기능 신설 필요성

- 아동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집행부 부서 및 산하기관 간의 업무협조와 정책적 연계 및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빈곤아동정책에 관한 연계·조정과 상호 협력을 위하여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각종 위원회의 난립으로 의사결정 속도가 떨어지고 책임행정을 저해한다는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바, 「아동복지법」에 따라 기설치된 ‘아동복지심의위’의 추가기능 설정 및 조정을 통하여 아동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기능을 수행토록 함이 합리적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개정안은 그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에 신설·추가한 것으로 보임.(참고자료-1, 2, 3 참조)

---

4) 서비스간의 단절성 및 중복성 문제가 있으며, 서비스간 기능 분화 및 상호연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움  
 - 학교, 교육청,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이 다양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들 서비스를 개별적이고 단편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즉,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주체가 분할되어 있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 서비스 체계 내 전문가들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복지욕구별로 분할되어 있음.

### 3 종합 의견

- 아동 빈곤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감안할 때, 빈곤아동 대책을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조정 기구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 다만 독립된 위원회 설치보다는 개정안과 같이 ‘위원회의 통·폐합을 통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라는 중앙정부방침 등을 감안하여 기존 아동복지심의위에서 아동빈곤 문제 해소를 위한 집행부 및 산하기관의 연계와 조정 및 상호협력을 도모하는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참고자료

### 1.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역할

※ 강남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역할(조례 제3조) 1~ 4호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2. 법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3. 「아동수당법」에서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정한 사항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

### 2.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1. 시·도 교육청(시·군·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4. 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3.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 (구성일자) 2018. 9. 1.
- (임기/인원) 2년 / 10명(위원장: 구청장, 부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연번	구분	직위	소속/직위	성명(성별)	위촉일	비고
1	당연직	위원장	강남구청/구청장	정순균(남)	-	
2		부위원장	강남구청/복지생활국장	이호현(남)	-	
3	위촉직	위원	강남구의회/구의원	안지연(여)	'20.9.1.	
4		위원	법무법인신효/변호사	최윤정(여)	'20.9.1.	
5		위원	서울시립대학교/교수	김주일(남)	'20.9.1.	
6		위원	이화여자대학교/교수	한세영(여)	'20.8.20.	
7		위원	수서경찰서/경찰	임유경(여)	'20.8.20.	
8		위원	강남경찰서/경찰	이원준(남)	'20.8.20.	
9		위원	강남세브란스/의사	김은주(여)	'20.9.1.	
10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김형래(남)	'20.9.1.	

4. 강남구 아동(0세~17세) 인구 현황 82,066명(전체 강남구 인구의 15.4%)

(2022.1.31 현재, 강남구 주민등록 인구통계) (단위 : 명)

		0~7	8~13	14 ~17
533,173	82,066	24,297	33,548	24,221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인구(0세~17세, 82,066명, 강남인구의 15.4%)

※ 전체 아동청소년 인구(0세~24세, 125,297명, 강남인구의 23.5%)

5. 저소득 아동 현황(0세~17세)

(2022. 2. 8. 행복-e음 집계) (단위 : 명)

총 인원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비고
812	647	66	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남구 아동 (0세~17세) 연령의 0.99%</li> <li>▶ 강남구 아동청소년(0세~24세)연령의 0.65%</li> </ul>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49
----------	-----

발의연월일 : 2022. 1. 28.

발의자 : 이재민·허순임·이호귀·

김현정·복진경·김진홍·

이상애(이상7인)

## 1. 제안이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함  
(안 제3조제5호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4. (생략)</p> <p><u>&lt;신설&gt;</u></p>	<p>제3조(기능)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u>」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p>